



기독일보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음력 4월 6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799호

“하나 되어 역사 바로 세우고 기도운동을”

권태진 목사,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조직 계획 밝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직전 대표회장을 지낸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사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지역 교계를 연합해 ‘역사 바로 세우기’와 ‘기도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최근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안희환 목사(예수비전성결교회)와 함께 군포제일교회에서 대담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권 목사는 “풀뿌리 민주주의 상황에선 지역 기독교 연합회의 역할이 너무나 큐하다. 이들과 함께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성도까지 다 참여할 수 있다”며 “이것

좋은 건국 이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로 알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17개 광역시도 및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권 목사는 “애국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 되자. 저는 사실 월남 참전 용사”라며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예마다 다 해야 한다”며 “6.25는 세계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런 역사관이 (해외로) 나가면 밖에선 펼쳐 뛴다 (침전했던) 나라들이 유엔군으로 왔었는데, 자기들이 북한을 침략하는 데 협조하려 온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6.25에 대한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잘 보호하고 새로운 각으로 나아가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례를 해야 한다”며 “(군포제일교회가 이렇게) 성경대로 하다가 보니까 밖에서는 꼭 정부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산 사람이 호흡을 중단할 수 없듯이, 교회의 예배는 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교회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꼭 드려져야 한다”고 했다. 권 목사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서 나리를 잘 되게 하려는 동기”라고 했다. 권 목사는 “물론 교회가 방역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욕야카르타 원칙, 국제·국내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문”

이상현·유정우 박사, 성과연 정기모임서 특강

“한국 법·정책에 영향 안 미치게 예의주시 해야”

“투쟁도구에 불과… 규범력 인정할 수 없어”

내법 체제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설정 한 공격좌표를 담은 투쟁도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유 박사는 “국제인권법 어디에도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동성애라는 단어 없다. 따라서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국제인권법상 인권이 아니”라며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비록 29명의 초안자들이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건의 규범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 원칙은 유엔 내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문건의 내용에 규범력을 부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이 원칙의 국내 수용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현재 욕야카르타 원칙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선언문이다. 따라서 국내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각 기관들이 이 문건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유 박사는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 규정에 비춰볼 때, 욕야카르타 원칙은 ‘헌법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혹 투네(호주 타즈매니아주 주민) 사례를 통해 성적지향이 성별에 포함되어 해석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권규 등 한국이 가입한 다자인권조약이 국내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권조약 모니터링 기관의 해석이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바 동 원칙의 규범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차금법 제정되면 ‘군형법 제92조의 6’ 무력화 될 것”



김영길 목사(바른군 인권연구소 대표사진)가 최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2회 강좌에서 ‘군동성애와 젠더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군대 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해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 간에 성폭행, 성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보호법”이라며 “군의관이 전입은 허사와 중식 시간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현역군인의 동성애 성행위 영상이 SNS에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 등이 기소됐다. 당시 동성애자가 기소된 이 사건을 두고 정의당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주장했다”고 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되는 갈등”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마을, 지난 새벽 이스라엘 공습으로 집들이 파괴 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상호 로켓포 공격과 공습을 주고 받으며 사상자가 증가했다. ▶관련기사 10면 ©Gay Lee SNS 캡처

그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위헌이 되면 군 기강이 와해 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후임이 들어오면 동성애자 간부나 고참이 편애를 하며 조직의 단결력이 와해 될 것이다.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로 인해 AIDS 등 각종 질병이 확산 될 수 있고, 동성 간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증가 될 수 있다. 소수의 보호를 위해 절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군대는 공동사회인 건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 즉 군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군기가 흔들리며 군대의 존재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합의했다고 치발하지 않으면 계급이 낮은 약자는 피해받을 수밖에 없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형법 제92조의 6, 군인사법,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병역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생긴다.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가능해지면 그들을 위한 우대 정책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군 선교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라고 했다.

전민수 기자

미래목회포럼, ‘저출

산’ 주제로 포럼 개최 》 7면

영화 <노바디>에 대한 기독교의 고찰 》 22면

신림센트럴파크 CENTRAL PARK

**강 남 10분대!
여의도 10분대!**

4억원대 (전용 59㎡ 일부층 기준)

SBS BIZ
SBS [집보리 가는 날] 선정
TV 출연 화제현장!

반값 아파트

주택홍보관 운영중

풀옵션 가전제품 무상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교통의 센트럴
• 2호선 신림역, 신림선 당곡역(예정)
초역세권 개발비전
• 남부순환로 강남순환도로 등
편리한 배속 교통망

자연의 센트럴
• 보라매공원, 상도교공원 등
단지 인근 풍부한 자연환경
• 도림천 청바지암, 복합체육시설이
인접한 유여로운 일렁 라이프

교육의 센트럴
• 당초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 가능한 안심학교
• 서울대·영대 등을 관광캠프 등
우수한 교육여건

생활의 센트럴
•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포드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 보라매공원 주변 등 편리한
메디컬 인프라와 관공시설

방역 안전 클린존
신림센트럴파크는 방역을 통하여
방역 체증 및 소통을 줄이고 있으며
안심하고 방문 하셔도 좋습니다.

02) 889-9011

주택홍보관: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52 연일빌딩
주택홍보관 조합회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조합원모집 변경신고수리일: 2021.02.15 토지사용권원 주택건설자기자 29.64%

* 조합원 자격기준: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호제11호가족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사람일 것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짜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1명에 경정하여 조거전용면적 85.3평미터 2인이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원의 세대주 ※ 조합원 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하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